

第36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3月28日(月) 11時20分

議事日程

1. 會期決定의件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附議된案件

- | | |
|-----------------------------|----|
| 1. 會期決定의件(議長 提議) | 1面 |
|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 提議) | 2面 |

(11時20分 開議)

○議長 李斗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在籍議員 22명 중 出席議員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臨時會 第1次 本會議 開議를 선포합니다.

事務局長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朴洙徹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위원회비용 실비변상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국제화추진 협의회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민의날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4년 3월 1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斗鶴 事務局長! 수고했습니다.

1. 第36回鍾路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 提議)

(11時22分)

○議長 李斗鶴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

니다.

금번 회기는 방금 사무국장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안전이, 8건이라고 하는 안전이 회부됨으로 해서 사실로 시일이 엄청 요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기히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94년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예, 玄壽漢議員 말씀하십시오.

○玄壽漢議員 玄壽漢議員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고 방금 말씀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안전이 8건이 들어와 있는 이 마당에서 하루 가지고 심사하기에는 시민행정위원회로서 너무 벅차다고 생각해서 회기를 좀 늘려주셨으면 하고 이의를 제기해 봅니다. 최소한 2일 이상 여유를 주시는 게 심도있는 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나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2일간 더 연장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수고했습니다. 玄壽漢議員께서 회기를 3일을 2일간 연장해서 5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계셨는데 동의안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時25分 舉手表決)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나머지는 기권하십니까?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玄壽漢議員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7분, 반대하시는 분이 3분, 기권이 8명으로 현재 5일 간으로 연기를 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하는 의원 있음)

예, 金成贊議員 말씀하십시오.

○金成贊議員 金成贊議員입니다. 지금 가결정족수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가결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18명 재석의원에 7명이 찬동을 해주신 것을 확정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斗鶴 정정하겠습니다. 金成贊의원 말씀대로 18명 출석해서 과반수 미달 기권으로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반수 미달로써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3일 간의 회기로 결정되었음을 재삼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내용에 대해서 기히 배부되어 있는 참고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제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일시	부의안건	비고
'94.3.28 (월) 11:00	○개회식	
개회식 직후	○국장보고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회기결의(1일간)	제1차 본회의
'94.3.29 (화)	휴회	상임위원회 활동
'94.3.30 (수) 15:00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 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 (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위원 회비용설비변상조례(안)	제2차 본회의

일시	부의안건	비고
	3. 서울특별시종로구국제 화추진협의회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 의날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 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 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안)	
	6.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 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 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 진에관한조례제정(안)	
	8.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 폐기물관리조례(안)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 提議)

(11時36分)

○議長 李斗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위에 따라 鄭命浩議員과 千相旭議員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4년 3월 30일 오후 3시 즉 15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림과 동시에 제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7分 散會)

○出席議員 18人

李斗鶴	鄭命浩	千相旭
玄壽漢	沈載得	李萬魯
李炳述	洪承台	羅在岩
丁昌熙	朴鍾植	芮相浩
朴禹信	朴勸先	田永泰
金憲中	林臥龍	金成贊